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해외환경규제동향

'해외 환경규제동향'은 환경부와 전경련이 함께 운영하는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EU, 통관제품 RoHS 검사절차 마련 중

- EU 기술적합위원회(TAC) 3단계 검사방법 제시 -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과 관련하여 지난해 EU 회원국의 국내법에 합치시키기 위한 기술적합위원회(TAC)가 수차례 개최되면서 조정 결과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개최된 TAC에서는 측정방법과 적합성 증명 및 균질재료(homogenous material) 등과 관련하여 영국 등이 주도적으로 표준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상당한 논의진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TAC는 제품 통관시 이루어지는 세관에서의 유해물질 함유여부 측정법으로 형광X선 분석에 의한 스크리닝 검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관에서 다양한 측정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저렴한 비파괴검사를 위해 휴대용 형광X선 장치로 측정하고, 2단계로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관내 전문검사기술자가 비파괴측정장치로 재측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정에도 불복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제품의 파괴를 수반하는 습식분해법(공정법)으로 정밀측정하는 3단계 측정방법이 논의됐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유럽정보통신공업협회(EICTA)와 국제전기전자위원회(IEC)가 지지하는 측정법으로, 공급망에서는 1단계에서 형광X선 분석을, 2단계에서 ICP 등에 의한 습식법으로 측정하는 2단계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TAC에서는 생산자가 RoHS 지침준수 입증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유럽표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표준마련을 위한 파일럿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TAC는 올해 첫 회의를 2월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TAC는 이와는 별도로 WEEE/RoHS의 회원국별 이행 모니터링 및 데이터 포맷에 관한 안을 확정했다. [출처 : UK DTI 등]

□ 3단계 측정법(Standard RoHS Test Procedure 案)

1단계 : 스크리닝	세관검사관	스크리닝 : 휴대용 EDXRF
↓ 이의가 있는 경우		
2단계 : 검사	세관검사기술자	Cr ⁶⁺ : 가시광선 분광광도계 Br : FT-IR 분광광도계 Pb, Hg, Cd : EDXRF
↓ 제조하는 경우		
3단계 : 분석	전문분석기관	Cr ⁶⁺ : 가시광선 분광광도계 Br : GC-MS Pb, Hg, Cd : ICP

VOL. **06**
2005. 02. 01

헤드라인

1

◆ EU, RoHS 통관검사절차 마련중

해외동향

2

- ◆ 중국, 폐기물 관리 대폭 강화
- ◆ 세제산업, 지속가능한 세정환경 선언
- ◆ 영국, 세계 최초 폐기물 매립권 7개년 실시
- ◆ EU집행위, 환경법 불이행 회원국에 법적 조치
- ◆ EU ETS 2기 회원국으로 출범
- ◆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전력소비 3억트 이하 AV기만 허용
- ◆ 배출권거래에 대한 미국 기업의 시각
- ◆ 일본기업, 해외에서도 환경대책 강화

전문가 리포트

6

◆ 2005년 EU의 주요환경정책

주요단신

7

- ◆ 중국, 에너지 절약제품 정부조달 실시
- ◆ 독일, WEEE 고려한 브라운관 리사이클 기술개발 지원
- ◆ EU ETS 전자등록시스템 규정 채택
- ◆ US EPA, 연방기관이 폐기하는 컴퓨터의 리사이클 계약 체결
- ◆ 일본,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 ◆ 일본, 페PET병 부정수출에 대한 방지 공문 긴급하달

관련 국제회의 정보

8



중국, 포장폐기물 관리 강화

-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개정으로 과대포장 및 방치폐기물 규제키로 -

중국은 지난 12월 29일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을 대폭 개정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4월부터 강화된 폐기물 관리제도가 시행된다. 1996년 법 시행 이후 처음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산업폐기물, 생활쓰레기 및 폐전자제품 등 신종 폐기물 오염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과대포장을 금지하였다. 지난 2002년 제정한 '청결생산촉진법'에서 포장재의 과대사용 및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대포장을 규제키로 하고 구체적인 하위법령 도입에 착수했다. 현재 환경보호총국은 포장표준 제정, 경제적 제제조치, 생산자책임 등의 세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포장표준은 한국, 일본, 캐나다와 같이 포장관련 제품 용적, 포장과 제품간의 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에 관한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며, 경제수단으로는 벨기에형 포장세 징수, 네덜란드형 과대포장제품 환경비용징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제도로는 생산자가 제품 포장의 회수책임을 지는 것과 독일과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증금 제도를 통한 포장회수 전문사업자 지정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한 동법은 특정제품의 경우 생산자의 포장재 회수가 의무화되며, 생분해성 필름을 포장재로 생산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둘째, 고형폐기물 수입관리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을 반영하여 고형폐기물을 환경위험성과 재자원화 가능성에 따라 수입금지품목, 제한품목 및 자율

허가품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수입되는 폐기물의 국가 표준 적합성을 평가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생산자 조업중단시 및 인수합병시 고형폐기물 처리 책임의 강화이다.

미국 슈퍼펀드법과 마찬가지로 생산기업의 분리, 합병, 해산, 파산 등으로 인한 산업폐기물 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원인자, 인수기업 또는 사후 토지사용권 수혜자의 폐기물 처리의무를 명문화 하였다.

넷째, 폐기물 방치 등으로 인한 오염피해에 대해 기업이 책임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 선진환경법 이론을 적용하여 법적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였다.

즉 손해배상에 있어 '원상회복'을 기본개념으로 채택하였고, '피해자' 개념을 도입하여 오염피해자의 법적지위를 확립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소송상 입증책임을 전환 시킴으로써 피고소자인 기업으로 하여금 소송시 환경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감시기구에 감독, 감시, 측량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유해폐기물의 관리조치강화, 지정기일제도 등을 개정법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또한 동법은 중국이 제정중인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 및 폐처리규정(일명 중국판 RoHS/WEEE)의 상위 근거법이라는 점에서 적용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만도 지난해 '과도포장 제한 최적화관리제도'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어서,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폐기물관리에 대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출처: 중국 환경보호총국 등]

세계산업, 지속가능한 세정현장 선언

국제세계·세정협회(AISE)가 '지속가능한 세정현장'(Charter for Sustainable Cleaning)을 선언했다. 자율적 협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현장은 참여한 업체들이 향후 생산제품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청정절차'에 따라 생산 및 유통하기로 한 것이다. AISE는 25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총31개 국가의 35개 비누·세제·세정용품 생산자단체와 여기에 소속된 9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유럽내 비누·세제·세정제품은 350억 유로 상당의 시장규모에 달한다.

이 현장은 지난 1998년부터 실시된 청정세제사용 캠페인의 결과이자 EU '통합제품정책'(IPP)의 산물이기도 하다. 동 현장에서 서명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소위 '청정' 절차에는 자원이용, 안전성 평가, 리콜절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동 절차를 모두 준수한 업체들은 자사 제품에 동 현장이 제정한 '지속가능한 세정제품'임을 나타내는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이 현장은 제품 전과정의 친환경성을 요구하며, 생산공정의 환경관리 제도자체 및 관련 서비스활동의 친환경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공: KOTRA 브뤼셀무역관]



영국, 세계 최초 '폐기물 매립권 거래제' 4월부터 실시

영국은 지자체의 폐기물처리당국간에 행해지는 '폐기물 매립권 거래제' (Landfill Allowance Trading Scheme)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오염원 거래는 지금까지 CO₂, NO_x 등 대기분야에서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폐기물분야에서의 거래제도는 세계 최초이다.

2005년 4월부터 실시되는 동 계획은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생분해성 폐기물의 퇴비화를 촉진시키고, 매립되는 양을 최소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톤의 생분해성 폐기물은 약 200~300m³의 매립가스를 발생시켜 매립지 불안정화 및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바, EU 매립지침(1999/31/EC)은 이렇게 매립되는 생분해성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영국의 경우 2001년 메탄 발생의 20%가 매립지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총온실가스배출의 2%에 해당하는 양이다.

영국은 EU매립지침에 따라 2010년까지 매립되는 생분해성 폐기물을 1995년 수준의 75%, 2013년까지 50%, 2020년까지 35%로 감축해야 한다. 동지침의 설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국은 매립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동 제도하에서 각 지자체 폐기물처리당국은 매립할 수 있는 생분해성 폐기물의 허용량을 정한 '매립권' (allowance)을 할당받을 수 있다. 리사이클이나 퇴비화를 통해 매립되는 생분해성 폐기물의 양을 감축함으로써 당국은 남은 매립권을 팔 수 있고, 한편 배출범위를 초과한 당국은 다른 당국으로부터 매립권을 구입하는 등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사용하지 않은 매립권을 이월(Banking)하거나 이후의 매립권을 앞당겨 쓸 수도 있어 비용효율적인 매립최소화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UK DEFRA]

EU집행위, 새해 초 프랑스 등 EU환경법 불이행 회원국에 잇단 법적 조치

- EU의 강력한 집행의지 표명, 각국 정부에 영향 미칠 듯 -

EU 집행위원회는 벽두부터 회원국의 EU 환경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경책을 잇달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랑스 등 EU 11개 회원국에 대한 EU 환경법 불이행에 대해 유럽 사법 재판소(ECJ)에 제소에 앞서 Reasoned Opinion (최종 서면경고)을 취한 것이다.

지적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EU의 자연보호 관련지침과 환경정보공개지침 등 4개 법안의 미시행이 문제되었으며, 네덜란드는 통합오염방지및통제지침, 포장폐기물지침 및 수자원기본지침 위반으로, 벨기에에는 휘발유 및 디젤연료품질지침과 오존층 파괴물질금지규정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다. 특히 EU 집행위는 그리스, 이태리, 벨기에와 핀란드 4개국의 EU배출권거래제 미이행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는 등 제도시행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C 집행위의 이러한 조치는 EC조약 제226조가 집행위에 게 회원국의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데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EU법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안이 회원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관련 회원국에게 특정 기간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주의서한' (1차 서면경고)을 전달한다.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집행위는 회
▶ 관련내용 4면

▣ 각국별 이행해야 할 환경관련 지침 현황

구분	국가	지침명
1	아일랜드	질산염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지침, 도시폐수관리지침, 폐기수자원기본지침, 야생조류보호지침, 야생동물서식지보호지침, 오존규정, 특정대기오염원에 대한 국가별 배출제한에 관한 지침, 환경영향평가지침
2	프랑스	환경정보공개지침, 수자원질유해물질배출금지지침, 야생조류보호지침, 야생동물서식지보호지침, 유전자변형미생물에 관한 지침
3	벨기에	배출권거래지침, 물기본지침, 휘발유 및 디젤연료품질지침,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규정
4	포르투갈	환경영향평가지침, 도시폐수관리지침, 야생조류보호지침, 수자원기본지침, 야생동물서식지보호지침
5	네덜란드	통합오염방지 및 통제지침, 포장폐기물지침, 수자원기본지침
6	핀란드	배출권거래지침, 야생동물서식지보호지침
7	스웨덴	야생조류보호지침
8	덴마크	통합오염방지 및 통제지침
9	룩셈부르크	수자원기본지침
10	이태리	배출권거래지침
11	그리스	배출권거래지침



EU 배출권거래제도, 21개 회원국으로 출범

EU 집행위원회는 2004년 12월말 25개 회원국중 5개국의 CO₂ 배출권 할당계획을 뒤늦게 승인했다. 이 중 사이프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몰타의 계획은 조건 없이, 스페인은 조건부로 각각 승인되었다. 이로써 EU 배출권거래제도(ETS)는 2005년 1월부터 최종 25개 회원국 중 21개국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에 참가하는 기업은 배출 할당량에 대한 과부족분을 배출권 거래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외에 EU역외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을 실시해 그 감축량을 자사의 감축분으로서 다른 배출권 거래 참가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각 회원국이 책정하는 배출권 할당계획은 ETS 1단계인 2005~2007년에 할당할 CO₂ 배출량을 각국의 에너지 대량 소비 사업시설에 배분하는 계획으로 이에 근거해 배출권 거래가 실시된다.

거래가 실시된다.

이번에 EU집행위가 5개국의 할당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1,296개 시설이 추가됨으로써, 최종 25개 회원국내 총 1만2천여 산업시설 중 8,578개 시설이 참가하게 되었다.

한편 EU집행위는 EU 배출권거래지침(2003/87/EC) 부속 서상에 규정된 기준에 근거해 각국의 할당계획을 평가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할당계획이 교토의정서상의 각국 CO₂ 배출감축목표에 부합하는가'이다. 이 외에도 국가 보조금 규칙 위반여부, EU역내에서의 경쟁 저해여부 및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 등을 고려하였다. 한편 탄소 1톤당 가격은 출범초기보다 다소 하락하여 1월 24일 현재 6.75유로에 거래되고 있다. [출처: EU Commission, Pointcarbon]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전력소비 3와트 이하 AV기기만 허용

미 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말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대폭 강화한 에너지효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에너지효율법은 캘리포니아주내의 특정가전제품에 대해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을 정하므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번 개정에서 DVD, TV 등 AV기기와 전원공급장치(Power Supply)를 대상에 추가하였다.

특히 AV기기가 포함됨에 따라 DVD, TV 등의 제품은 2006년부터 대기전력 및 사용전력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전원공급장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낭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가정용 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및 기타 가전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동 법에서는 적용의 품목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05년 1월 1일부터 에너지스타 인증요건을 강화하여 컴퓨터모니터의 절전(sleep)모드 뿐만 아니라 사용시의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의 전자제품을 충전하는 외부전력어댑터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출처: 미캘리포니아주 등]

□ 소비자AV기기 기준

종류	시행일	최대전력사용기준
소형오디오	2007. 1. 1	2W
TV	2006. 1. 1	3W
DVD 플레이어/레코더	2006. 1. 1	3W
디지털 TV 어댑터	2007. 1. 1	1W

▶ 3면에 이어

원국에게 'Reasoned Opinion' (최종 서면경고)을 통해 ECJ에 제소할 것임을 경고하게 되는데, 이 서한에는 EU법 위반 내용과 특정 이행조치기간(보통 두달)을 명시하며, 이 또한 이행하지 않으면 ECJ에 제소하고 그 판결을 받아 이행을 강

제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EU집행위의 조치는 환경분야에서 강력한 집행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이를 실제 이행해야 하는 각국 정부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EU Commission]



“지금 지불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더 많이 지불하느냐의 문제”

- 배출권 거래에 대한 미국 기업의 시각 -

미국의 비준거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가입으로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가 대통령 취임 후 동의정서가 선진국에게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발효될 경우 5백만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고 가입을 철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다국적 기업들이 교토의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교토의정서 발효국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화학업계의 대표격인 듀폰은 전체 매출액 269억 달러중 1/3을 교토의정서 가입국가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기업은 지난 10년간 온실가스 방출량을 60% 이상 감축했다. 듀폰의 수석고문 톰 제이콥은 “미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듀폰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은 소위 시카고 기후교환소(Chicago Climate Exchange)프로그램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권(credit)을 교환하는 교토메카니즘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2월에 개설된 시카고 기후교환소는 여전히 거래량이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미 연방정부를 대신해 북동부 9개 주정부는 올 4월까지 지자체 내에서 탄소교환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에 대한 미국내 현상에 대해 컨설팅 기업인 Global Change Associates의 피터 푸사로 회장은 “결국 지금 지불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더 많이 지불하느냐의 문제다. 미국기업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이처럼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워싱턴의 결정만 남아있는 만큼, 우리에게도 더 이상 “미국도 안하는데...”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제공: KOIRA 워싱턴 무역관]



일본 기업, 해외거점에서도 환경대책 강화

- 30% 이상의 기업이 녹색구매, 50% 이상이 올해 4대유해물질 전폐 -

최근 일본경제신문사가 실시한 환경경영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해외 기업체에서 환경부하가 적은 부품·재료를 우선 조달하는 녹색구매의 기준을 현지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 397개사 중 3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조사 결과 대비 약 10% 상승한 것으로 해외에서도 부품 등의 조달단계에서 환경대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특히 전기부문에서는 60%, 정밀기기부문에서는 40%를 넘어서고 있다. 진출한 지역의 주민이 입수 가능하도록 환경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기업도 평균 38.5%에 달하며, 전기,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부문은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일수록 지자체, 소비자, 투자가를 대상으로 환경관련 문제를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해외 생산거점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도 33%에 달했다. 그러나 물류부문 온실가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6.5%에 그쳤다. 일본 본토에서와 같이 해외에서도 물류부문에서의 온난화대책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조업에서 제품에 사용되는 납, 6가크롬, 수은, 카드뮴의 4개 물질 전폐시기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이미 전폐했거나 2005년말까지 전폐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274개사중 2004년까지 납사용을 전폐한 기업이 10%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일본기업 내에서 유해물질 관리대책이 매우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환경대책에서 앞서가는 것이 제품의 경쟁력과 결부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부품의 공급망과 일체가 되어 유해물질 감축을 추진하려는 기업이 향후 더욱 늘어날 것임을 전망케 한다. [제공: KOIRA 도쿄무역관]



2005년 EU의 주요환경정책



KOTRA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부장

새로 출범한 EU 집행위원회의 초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리스본 전략이다. 따라서 향후의 EU 환경정책 역시 리스본 전략에 어떻게 통합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 2005년 EU의 환경정책은 교토의정서가 오는 2월 발효됨에 따라 올 해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현안이 이슈화될 전망이다. 사실상 2005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세계 및 EU 행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5월에는 세계 각국이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세계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질 것이며, 11월에 최초의 공식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들 회의 결과가 EU의 향후 온실가스 관련 조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EU가 회원국별로 할당할 배출량 감축목표 역시 여러 면에서 회원국들의 반발을 받고 있다. 회원국들은 2012년 이후의 조치에 대한 상세 전략을 3월중 논의할 예정이다. 금년 1월 1일 출범한 EU의 배출권거래제도(ETS)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빨라야 3월까지도 배출량을 기업에 할당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배출권 거래 역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 올해 말까지 이를 수정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집행위의 이러한 수정안 제출 시한은 2006년 7월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또다른 이슈로 불소화가스(F-가스)의 사용 규제이다. F-가스 규제지침안은 이미 지난 2004년 10월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상태여서 올해에는 규정 내용에 대한 작업보다는 법규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온실가스에 이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2005년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유럽의회가 1월말에 REACH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가을에 정식으로 제1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사회는 금년말까지 REACH에 대한 합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EU의 장국을 맡게되는 룩셈부르크와 영국은 이 제도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금년내 회원국간 합의가 어려울 지 모른다는 조

심스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여타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조치들도 주로 화학물질 오염에 집중되어 계속 추진될 것이다. 이외에도 집행위는 4가지 분야(대기오염, 폐기물 방지 및 리사이클링,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해양환경)에 대한 전략을 2/4분기내에 마련할 것이며, 3/4분기에는 살충제, 토양보호제, 도시환경에 대한 전략이 마련될 것이다. 이들 7개의 전략은 모두 제6차 환경조치계획(6th environmental action plan)에 의거한 일정이다. 또한 3가지 폐기물(폐전지, 광산폐기물, 폐기물선적) 관련 법안도 주요 의제로 남아있다. 이 세가지 모두 작년 하반기에 유럽의회 제1차 검토를 받은 사항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환경관련 조치 이외에도 올해 중순까지 EU 회원국들이 합의해야 하는 2007-2013년간의 EU 예산도 EU 환경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EU 예산이 환경분야에 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Natura 2000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예산이 할당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Natura 2000에 할당되는 예산 규모에 따라 EU의 생물 다양성 전략의 추진 정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 2005년 EU의 주요환경정책 이슈와 일정

	주요 예정 이슈	기타 미해결 현안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검토(1월) • EU환경정책 전반적 검토(1월) • 기후변화 협약 이행전략에 대한 의견서(1월) • 폐차지침상의 사용금지물질 및 시한 수정(1월) • 2004년 ETAP 이행 보고서(1월) • 불 정상회담 준비(3월) • 친환경목재에 대한 자율 인가제도(4월) •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지침(6월) •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전략(6월) • 전략 수립과제(4) : 대기오염, 쓰레기 방지 및 리사이클링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해양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은에 대한 전략 •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자동차세 수정 지침 • 이륜 및 삼륜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방지지침 • 자동차의 EURO 5 배기가스 배출기준 지침 •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한 EU전략이행 의견서 • 환경 및 고용에 대한 의견서 • F-가스 규제 지침안 •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마련 • 선박 연료의 유황 함유량 제한 • Polyaromatic hydrocarbons(PAHs) 규제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수립과제(3) : 살충제 토양보호제, 도시환경 • 핵 폐기물 화물에 대한 지침 • 1998년 생물 다양성전략 재검토 	

중국, 에너지 절약제품 정부조달 실시

중국이 올해부터 녹색정부조달을 실시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에너지절약제품정부구매실시의견'을 발표하고 향후 각 국가기관 사업부문 등은 재무부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에너지 절약제품의 정부조달은 올해 우선적으로 중앙 1급 예산단위 기관과 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2006년에 중앙 2급 기관과 도시 1급 기관으로 확대하고, 2007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제품은 에어컨디셔너, 냉장고, 형광램프, TV, 컴퓨터, 프린터, 양변기, 수도꼭지 등 8종류로서, 84개 기업의 약 1,500개 제품이 선정·발표되었다. 중국은 향후 대상제품을 에너지 절약제품 뿐만 아니라 물 절약 제품 등에도 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상품이 중국 등 정부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독일, WEEE 고려한 브라운관 리사이클 신기술 개발 지원

지난해 말 독일 연방환경부는 혁신적인 브라운관 리사이클 신기술 개발에 '환경부하감소 투자프로그램'을 통해 약 24만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받는 ZM-Elektronikrecycling이라는 기업은 파쇄기를 이용한 기존의 리사이클 기술과 달리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브라운관을 무연의 스크린과 납을 함유한 콘 유리로 분리함으로써, 리사이클이 가능한 유리 성분을 약 50%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종래의 방법에서는 8%). 독일은 이 신기술로 자원이용량, 매립폐기물량을 감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이나 CO₂ 배출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현재 컴퓨터나 TV가 LCD 및

PDP 화면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여서, 머지않아 구형 CRT TV가 대량으로 폐기될 것이 예상된다. 점에서 이러한 혁신적인 리사이클기술의 개발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지원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독일은 의회에서 심의중인 EU의 WEEE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지원하는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출처 : 독일 연방환경부]

EU, ETS의 전자등록시스템에 관한 규정 채택

EU는 EU배출권거래지침상에 예정되어 있던 등록시스템규정을 2004년 12월 21일 채택했다. 이 규정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소유자를 계속 추적하는 전자등록시스템이 설치된다. 배출거래시장은 지금까지 장래의 특정 일시에 있어 구입자에게 배분범위를 이전하는 '선물' 거래에 의존해왔다. 이제 등록시스템의 창설로 즉석에서 계약 집행이 가능한 '현물' 거래시장의 발전이 가능해지게 됐다. [출처 : EU Commission]

US EPA, 연방기관이 폐기하는 컴퓨터의 리사이클 계약 체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모든 연방기관에서 사용이 끝난 컴퓨터 등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리사이클 계약을 체결했다.

전자기기의 리사이클 및 자산의 폐기(READ)에 관한 '범정부취득계약 (GWAQ)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타연방기관에 폐기할 기기의 적절한 리사이클 및 처분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제도에 의한 첫 계약 체결이다.

현재 미국정부는 전세계 컴퓨터의 약 7%를 구입하는 최대 구매자로, 2005년도에만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략 60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정부는 매주 약 1만대의 컴퓨터를 폐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창고 등에 보관한 뒤 매립처분장에서 처

분하거나 환경기준이 느슨한 해외에 반출해 왔다. [출처 : US EPA]

일본,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한다

일본 환경성은 디젤자동차의 배기가스 미세먼지(PM)에 대하여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배기가스 규제인 일명 '新長期規制'는 차량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 버스 등의 배기가스내 PM을 0.027g/kWh 이하로 제한하게 되는데, 현재 검토중인 개정안은 2010년 이전에 이보다 기준치를 50% 이하로 낮춘 0.013g/kWh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미국이 2007년부터 0.013그램이하로 규제키로 하는 등 현재 국제적인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추세에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공 : KOTRA 도쿄무역관]

일본, 페PET병 부정수출에 대한 방지 공문 긴급하달

일본정부는 지난 1월 19일 페PET병의 부정수출에 대한 방지를 당부하는 긴급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이는 일본이 지난해 중국정부로부터 수출한 페플라스틱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이 혼입됐다는 이유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보인다. 공문은 페PET병 안의 잔존물이나 혼입물이 부패하여 강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자원이 아니라 폐기물처리법에서 정한 폐기물로 분류되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바젤협약상의 유해폐기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지자체는 수집한 페PET병을 구입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그 상태를 확인하고, 강한 악취가 나올 경우 수출자에게 바젤협약 관련법상의 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 일본 환경성]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해외환경규제동향



◆ 발행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환경마크협회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 전 화 : 02-358-6800 (교환133)
 ◆ 팩 스 : 02-358-8561
 ◆ 이메일 : tomasyoon@kel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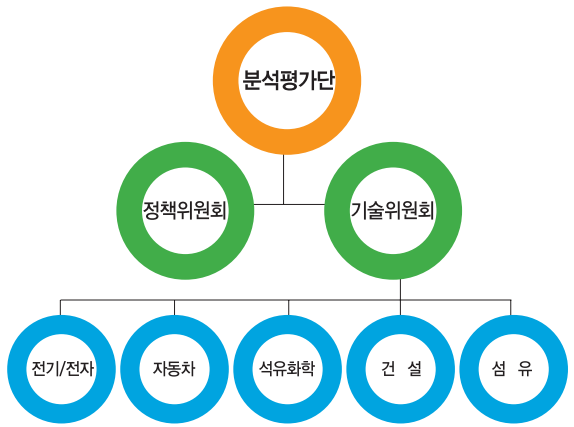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 본지의 궁금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상기 환경마크협회내 TEN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규제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 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의 환경규제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및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운영에는 환경마크협회·KOTRA·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Calendar

2005년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0 ①	31 ②	1	2	3 ③	4	5
6	7	8	9 ④	10 ⑤	11 ⑥	12
13	14	15 ⑦	16 ⑧	17	18	19
20	21 ⑨	22 ⑩	23	24 ⑪	25 ⑫	26
27	28					

2005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⑬~⑮	9 ⑯	10	11	12
13 ⑰	14	15	16 ⑱⑲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관련 국제회의 정보

- ① 1.30~2.2 Environment 2005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 ② 1.31~2.5 식량 및 생태계를 위한 물에 관한 FAO/네덜란드 국제회의 (네덜란드 헤이그)
- ③ 2.3~5 Clearing House에 관한 아태지역워크샵 (태국 방콕)
- ④ 2.9~12 UNFCCC 아태지역 국가별온실가스목록에 대한 CGE 실제훈련워크샵 (중국 상하이)
- ⑤ 2.10 WEEE와 조명산업 컨퍼런스 (영국 런던)
- ⑥ 2.11~18 제4차 로테르담협약 화학물질검토이사회 (스위스 제네바)
- ⑦ 2.15 WEEE설명회 (영국 런던)
- ⑧ 2.16 교토의 정서 발효기념 심포지엄 (일본 교토)
- ⑨ 2.21~22 산업폐기물관리 컨퍼런스 2005 (태국 방콕)
- ⑩ 2.22 WTO CTE (스위스 제네바)
- ⑪ 2.24 WTO CTESS (스위스 제네바)
- ⑫ 2.25~27 재생에너지 2005 (독일 보에블링겐)
- ⑬ 3.8~11 환경기술 및 서비스 국제무역 전시회 (독일 라이프치히)
- ⑭ 3.8~10 청정공기 기술 및 전략회의 (미국 볼티모어)
- ⑮ 3.8~10 국제 대체연료 2005 포럼 및 전시회 (독일 베를린)
- ⑯ 3.9~11 제5차 국제 자동차 리사이클링회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⑰ 3.13~19 제9차 카이로 에너지/환경국제컨퍼런스 (이집트 카이로)
- ⑱ 3.16~17 제12차 유럽포장법회의 (벨기에 브뤼셀)
- ⑲ 3.16~18 ENEX - New Energy2005 (폴란드 페어그룬트)

